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09호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547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548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8
○ 인천광역시조례 제6549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0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1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2호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2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3호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7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4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5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37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6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45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7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8호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57
○ 인천광역시조례 제6559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 인천광역시조례 제6560호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 인천광역시조례 제6561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인천광역시조례 제6562호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72
○ 인천광역시조례 제6563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 인천광역시조례 제6564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8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94호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5
- 인천광역시규칙 제3195호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02
- 인천광역시규칙 제3196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8호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107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5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19

기 타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21-41호 『역무도급 수급인 모집』 공고(재공고) 150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49호 공고 154

조 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47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위촉(임명)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 위원용)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 』 위원회의
심의를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
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
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개정이유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 대상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제7조의2)
- 나.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6호)
- 다. 출석회의, 서면회의 등 위원회의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제9조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48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견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소통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함.(제2조)
- 나. 홍보대사의 위촉 대상 및 임기를 규정함.(제3조)
- 다.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및 제5조)
- 라. 홍보대사 운영과 해촉, 예우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49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방역 등) 처장은 의회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회청사의 청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
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의회청사의 일시적 폐쇄

5. 그 밖에 처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시의회 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회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제1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 조례 제6550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중 “기획행정”을 “행정안전”으로, 제28조제2항제2호 중 “기획행정”을 “행정안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최근 늘어나는 안전사고와 코로나-19,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등 안전에 관한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칭을 기획행정 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획행정위원회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함
(제27조 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
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1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
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를 “정하고 시
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를 “처리되어”로, “모든 것을”을
“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시”라
고”를 ““시”라”로 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조례」 제2조”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를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여”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제1항 중 “4년”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업무 담당관”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

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를 “데이터 확보 및 부서 간 데이터의 연계·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으로, “경우 다른”을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제13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법령 등 상위법 제정 및 시행(2020.12.10.)에 따른 일부 조항의 용어정비와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데이터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제명 및 목적 변경
(제명 및 제1조)

나. 데이터 정의 개정 및 공공데이터, 비식별화 정의 추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다. 상위법 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위를 규정(제2조 및 제6조제3항)

라. 위원회의 서면·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제11조제2항)

마.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연계·공동 활용 활성화 근거 마련
(제14조제1항)

바. 시장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의무를 규정(제14조의2 신설)

사.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규정 마련(제14조의3 신설)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2호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회의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회의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임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 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도 지역 협의회 시설 근거 및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령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안전분야 협의회 규정 목적과 중앙의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기능(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협의회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위원의 해촉(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실무협의회 운영(제8조)
- 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제10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3호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전
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3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3. 그 밖에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역 상황 및 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군·구 평가단”이라 한다)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의 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을 소집·운영하며, 평가단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단원의 조사구역 내 피해시설물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소유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평가단원 또는 평가단원이 속한 기관이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② 해당 안전건의 당사자는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평가업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
4. 평가단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평가단원의 관리) 시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구 평가단의 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활동 등) 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군·구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3조(시·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

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4조(경비지원)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32-440-33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제명)

나. 조례의 목적을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제1조)

다. 평가지원단의 설치, 구성·운영을 시장의 책무, 평가단의 기능, 구성·운영으로 개정(제2조, 제3조 및 제4조)

라. 평가단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신설(제5조, 제6조 및 제7조 신설)

마. 평가단원의 관리 규정 신설(제8조 신설)

바.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신설(제9조 신설)

사. 군·구 위험도 평가단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규정 신설(제10조 신설)

아. 평가단의 활동 규정 신설(제11조 신설)

자. 시·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신설(제13조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4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점가 지원”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원”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로 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중 ““시장”라”를 ““시장”이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를 “전통시장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20.8.12.)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수정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제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5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
3. “창업 생태계”란 기술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보완·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

치를 창출해 나가는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한다.

4.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술창업지원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기술창업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 위원 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술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육성
2. 기술창업 공간 제공
3.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기술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기술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기술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9.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

계를 위하여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기술창업교육)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	(C) 10	식료품 제조업	정보 통신업 (J)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M) 71	전문 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N)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P)	(P) 85	교육 서비스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 24	1차금속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Q) 86	보건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제정이유

기술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15조까지)
- 나. 기술창업지원과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제16조)
- 다. 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7조)
- 라.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제18조)
- 마. 기술창업교육 제공 및 기술창업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제19조
및 제20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6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 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요원 정의(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제3조)
- 다. 실태조사(제4조)
- 라. 처우개선 사업(제5조)
- 마.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
-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7조)
-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제8조)
-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7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가족방안묘 및 계단식가족방안묘(이하 “가족방안시설”이라 한다)를”을 “가족방안묘, 계단식가족방안묘, 가족방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 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가족방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 중 “가족방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방안 시설”을 “가족장사시설 중 가족단위의 방안시설”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가족방안시설의 안치대상 등”을 “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방안시설”을 각각 “가족장사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5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 설 묘 지	비 조 성 묘 지	인천광역시 중 구 영종공설묘지	인천광역시 중 구 윤북동	
		" 미추홀구주안공설묘지	" 미추홀구 주안동	
		" 연수구옥련공설묘지	" 연수구 옥련동	
		" 청학공설묘지	" 청학동	
		" 남동구장수공설묘지	" 남동구 장수동	
		" 도림공설묘지	" 도림동	
		" 운연공설묘지	" 운연동	
		" 논현공설묘지	" 논현동	
		" 수산공설묘지	" 수산동	
		" 서 구 경서공설묘지	" 서 구 경서동	
		" 원창공설묘지	" 원창동	
		" 가정공설묘지	" 가정동	
		" 검암공설묘지	" 검암동	
		" 원당공설묘지	" 원당동	
		" 불로공설묘지	" 불로동	
" 왕길공설묘지	" 왕길동			
" 대곡공설묘지	" 대곡동			
"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 부평구 부평동			
조성 묘지	인천광역시 서구왕길조성묘지	인천광역시 서 구 왕길동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 부평구 부평동		
화 장 시 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봉 안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신설)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신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자 연 장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 인천가족공원 정원식 수목장 · 인천가족공원 가족정원장(신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유 택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부 속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문화홍보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제1항 관련)

1.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 분			기 준	단 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시설	봉안당	1인용	1기	30년	사용료 950,000원	2,0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1기	30년	사용료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봉안담	1인용	1기	30년	사용료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1기	30년	사용료 1,1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봉안담 (12위)	1기	90년	사용료 9,500,000	-	
					관리료 5,760,000	-	
	가족 봉안담 (8위)	1기	90년	사용료 6,330,000	-		
				관리료 3,840,000	-		
	가족봉안묘 (16위)		1기	90년	사용료 8,8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4,500,000원	-	
	계단식가족 봉안묘(8위)		1기	90년	사용료 4,400,000원	-	설치비 실비
		관리료 2,700,000원			-		
무연고		1기	10년	150,000원	-		
자연장지	수목장립 및 자연장	1기	30년	사용료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1기	30년	사용료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정원장(6위)	1기	90년	사용료 7,200,000	-		
				관리료 2,160,000	-		
유택산	산골	1기		10,000원	50,000원		

-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및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는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⑥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자는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말하며 자연장지 이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2.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기 본 금 액			4.95㎡ 초과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료	
4.95㎡	21,400원	3,600원	17,800원	3.3㎡당(1,200원)

3.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구 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	3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	5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4. 인천가족공원 장사문화홍보관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시 설 명	면적[㎡]	기 준	사용료	냉·난방비	비고
장사문화 홍 보 관	영상회의실	151.2㎡	1회 (1시간)	10,000원	15,000원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 · 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100분의50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희생·공헌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100분의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관내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외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 가. 화장시설 : 면제
- 나. 봉안시설 : 100분의 30 감면
- 다. 자연장지 : 100분의 50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개정이유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사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 가. 신규 가족단위 시설인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을 명시(제9조)
- 나. 봉안에만 국한된 현재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명칭을 가족봉안시설에서 가족장사시설로 변경(제9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3)
- 다.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제20조 및 제21조)
- 라. 자연장지 중 가족정원장 사용기간을 90년으로 신설(제21조 단서 신설)
- 마. 신규 봉안시설 별빛당 명칭 신설(별표 1)
- 바.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 신설(별표 2)
- 사.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의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범위에 관외주민 포함(별표 3)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8호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

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돌봄 인력교육 및 시설운영 컨설팅
 4.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사업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의 지도·감독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초돌봄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아동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아동돌봄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을 규정함.(제9조)
- 바.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59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술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술단장”을 “그 밖에 단장”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 중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을 “전형 및 정기평정,
위촉연령 연장, 명예퇴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상한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
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유,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고 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이유

시립예술단원의 선순환 유도 및 예술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 등 시립예술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의 보완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명예퇴직 도입을 위한 조항 신설 및 내용 추가(제6조 및 제10조)
- 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60호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방역 등) 시장은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청사의 청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
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시청사의 일시적 폐쇄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	단 위	기 본 사 용 료	비 고
2층 대회의실	1회/4시간	100,000원	
1층 중앙홀	1회	무 료	
야외테니스장	1회	무 료	
자료실, 어학실		무 료	

◇개정이유

청사 시설물의 개방, 사용에 따른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개방시설물인 잔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 조성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 개방시설물인 잔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조성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4조)

나.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제19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 조례 제6561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센터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①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

②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3월말”을 “2월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市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센터의 운영,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신설(제6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맞춰 결산서 제출기일을 정비(제10조제2항)

- 결산서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 2월말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62호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무원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직 근로자
3. 「인천광역시 공무원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6조 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 나.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6조)
- 다.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라. 지원 방법,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63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
적·연면적·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
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
센트 이하

제18조 제목 중 “경미한 행위”를 “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9조제2항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58조제2항제2호바목 중 “도·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을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6항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주거복합건축물과”를 “주거복합건축물과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이하(건폐율의 최댓값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을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위임사무란의 제1호가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별표 3 위임사무란의 제1호가목7)나)(2)를 삭제하고, 같은 란에 제1호가목7)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등록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생활숙박시설 및 건폐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제65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제65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동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이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영 별표 8 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8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복합건축물

나. 기숙사가 포함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기숙사 비율과 공동주택 비율(8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을 합산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외의 준주택은 해당 연면적(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부를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나. 생활숙박시설 또는 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해당 연면적(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을 생활숙박시설 또는 준주택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준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4.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가. 생활숙박시설(공동주택·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제5호의 용적률. 이 경우 해당 생활숙박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나.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제5호의 최저용적률(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안의 80퍼센트 이상 부분에 해당하는 용적률. 이하 같다)

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공동주택·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5호의 용적률.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연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제5호의 최저용적률

5.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	용적률(% 이하)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 및 유통상업지역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 ~ 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 ~ 30 미만	460	1,200	900	600
30 이상 ~ 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 ~ 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 ~ 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 ~ 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 ~ 80 미만	330	600	510	350
80 이상	300	500	440	320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건폐율의 최대한도 등 관련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과 농지의 절·성토 기준을 신설함.(제8조의2 및 제18조제1항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등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6조제1항, 제64조제16항, 제65조제14항, 별표 3 제1호가목1)라), 별표 3 제1호가목7)나)(2) 삭제 및 제1호가목7)다) 신설)

다.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등에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함.(제36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제2호바목)

라.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근린상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비함.(제65조제4항,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제1항, 별표 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64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1. 7.시행)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과 표시방법을 정함(제12조제6항)

규 칙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194호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를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를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로, “아트센터 인천의”를 “아트센터인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정 주기로 정기적”을 “정기적”으로, “아트센터 인천의 장(이하 “단장””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

으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아트센터 인천”을 “아트센터인천”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료회원의 운영)”을 “(유료·무료회원의 운영)”으로, “조례 제30조에 따라”를 “조례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체기획공연(행사) 등 관람료 면제기준(제7조제1항 관련)

종 류	대 상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대표, 일반시민 등
신년 및 송년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에 의한 유공자,
시민의 날 기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기념, 아트센터인천 개관 기념 등 시책 홍보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대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보육료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등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아트센터인천의 홍보·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별표 3]

아트센터인천 관람료 할인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할인대상	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및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증 및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 예우대상자 가족 : 가족관계 증명자료 제시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8세 이하), 청소년(9 ~ 24세 이하),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 ○ 문화소외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패스 소지자, 유료회원, 20명 이상의 단체 등 	50% 범위 내 시장이 정한 할인율

※ 할인규정의 중복 적용 불가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장(콘서트홀·다목적홀) 사용 허가신청서

● 신청인(공연자 또는 공연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E-mail:)			

● 신청내용				
공 연 명			사용(공연) 장소	(콘서트홀, 다목적홀)
준 비 기 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공연횟수 (회)	
공 연 기 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철 수 기 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 공연성격 (V 체크)	순수예술	대중예술 ¹⁾ , 행사 ²⁾ , 기업콘서트 ³⁾	녹음	방송, 영화, CF 등 기타
------------------	------	---	----	-----------------

● 사용시설	
기 본 시 설	
부 대 시 설	
입 장 료	

● 공연 단체의 주요경력 또는 연혁 (별지첨부)

● 비 고(첨부서류)
공연계획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서류 1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1)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요, 팝 등 대중음악 및 뮤지컬 등을 말함.
- 2) 세미나, 회의, 강좌 등 공연과 상관없는 진행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3) 영리법인(주식회사, 영리사단법인,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이 주최하는 전석 초대공연 또는 사용자가 위 영리법인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고 그 영리법인을 위해 초대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단, 순수예술에 한하여 오픈 좌석의 30% 이상을 일반유료판매분으로 등록하면 기업콘서트로 보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신청인(공연자 또는 공연단체)

단체(공연자)명		연 락 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E-mail:)			

● 신청내용

공 연 명		사용(공연) 장소	
부대시설명	공연(행사)명	사용시간	비 고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 . (시) ~ . . (시) / ()일간 ()시간	
양상블 리허설룸		. . (시) ~ . . (시) / ()일간 ()시간	
리셉션룸		. . (시) ~ . . (시) / ()일간 ()시간	
귀빈실		. . (시) ~ . . (시) / ()일간 ()시간	
개인연습실		. . (시) ~ . . (시) / ()일간 ()시간	
합 계	(신청인은 기재안함)		

● 사용자(단체)의 주요경력 또는 연혁

(별지첨부)

● 비 고(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트센터인천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부속설비 사용허가 신청서

(2-1)

● 신청인(공연자 또는 공연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FAX
대표자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mail:)		

● 부속설비내역 및 사용료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분	종 류	단위	단가		횟수	기간	금액(원)	비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악기	그랜드 피아노								
	- 스타인웨이 대형피아노(D274)	1일/1대	110	-				조율비 별도 (전술 조율사만 소할가능)	
	- 중형그랜드피아노	1일/1대	50	-					
	- 업라이트피아노	1일/1대	30	30					
	타악기								
	- 팀파니/1조(5EA)	1일/1조	90	-					
무대	덧마루								
	- 오케스트라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 합창단 편성	1일	90	-					
	- 40㎡ 이하	1일	-	50					
	- 10㎡ 추가시	1일	-	30					
- 합창라이저/1조(7EA)	1일	60	60				콘서트홀 공동사용		
음향	녹음								
	- 2 Track (CD, File, Wave 등 녹음)	1회	50	50				디스크,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Multi Track 녹음	1회	100	100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외부기자재(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녹화								
	- DVD, File(아트센터인천 장비)	1회	50	50				DVD 신청자 부담 Fullshot 녹화	
	- 외부기자재(영상/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카메라 2대까지 가능	
	마이크								
	- 무선 마이크	1회/1대	25	25				건전지 사용자 부담	
	- 유선(콘덴서) 마이크	1회/1대	10	10				서스펜션마이크 무료	
	모니터 스피커								
	- 12인치, 15인치	1회/1대	25	25					
	무선인터컴								
	1일/1대	무료	무료				건전지 사용자 부담		
확성 설치(콘솔 및 유선마이크)									
- 2ch 이하	1일	100	100						
- 3ch 이상	1일	200	200						

(2-2)

◎ 부속설비내역 및 사용료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분	종류	단위	단가(단위천원)		횟수	기간	금액(원)	비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빔프로젝터							
	- Rear Projector (20,000ANSI)	1일	200	-				
	- Front Projector (20,000ANSI)	1일	-	200				
조명	Grand MA 2(light)	1작품	80	80				콘서트홀 공동사용
	Moving LED Light	1일/1대	20	20				
	LED STRIP BAR	1일/1대	20	20				
	FollowSpotLight 1.75kw	1회/1대	30	-				운영인력 대관자부담
	ColorFilter	1작품	100	100				
기타 사용	라디오(인터넷)방송중계 및 녹음	1회공연	300	300				테이프신청자부담
	TV 녹화 / 중계	1회공연	300	300				(지역방송50%할인)
	외벽 현수막	1회공연	승인 조건	승인 조건				
로비 사용	포토존	1일/1개	100	100				
	팬 사인회	1일/1개	150	150				
	현수막		승인 조건	승인 조건				
	배너		승인 조건	승인 조건				
	홍보 및 판촉부스 설치 (추가 설치)	1일/1개 (1일/1개)	80 (100)	80 (100)				
디자인 지원	조명 디자인	1작품	1,000	1,000				크루비용 별도
	음향 디자인	1작품	1,000	1,000				공연일 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주의사항

- 기자재 사용은 분야별 담당자 사전 검토에 따라 사용해야 함
- 음악회 공연 및 각 장르 공연에 사용되는 피아노 사용 시 정상적인 연주행위(건반연주)외 사용금지
- 상기 위의 장비 및 기타 자재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
- 상기 내용상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용요청 시 무대기술 담당팀과 협의 후 사용 결정
- 피아노를 사용하는 공연의 경우 공연의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을 조율 하여야 함
-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부속설비는 사용이 거절될 수 있음
- 콘서트홀과 다목적홀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콘서트홀 사용자의 사용을 우선으로 함.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속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 신청인(공연자 또는 공연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mail:)		

● 허가내용(변경 전)			
공연명		사용(공연) 장소	
준비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공연횟수 (회)
공연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철수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 신청내용 (변경, 신청)			
변경내용	공연명		사용(공연) 장소
	준비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공연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철수기간	. . (시)부터	. . (시)까지 ()일간 ()시간
취소	사용료 반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변경/취소 사유(상세히 기재)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장에 대하여 (사용 변경, 사용취소,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용허가서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등

[별지 제7호서식]

(3-1)

아트센터인천 시설 사용 표준계약서(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계약담당자” 이라 한다)과 사용자(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담당자” 는 “계약상대자” 의 아래 공연(행사)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용 권리를 보장한다.

공연(행사)명									
공연(행사)장소									
장르구분	순수예술	대중예술, 행사, 기업콘서트			녹음	방송, 영화, CF 등 기타			
사용기간 (사용시간)	준비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공연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철수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부대시설	(세부내역 별첨)								
부속설비	(세부내역 별첨)								
비 고									

2. 사용료 : 금 원정(₩ _____)

※ 사용료는 아트센터인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속 설비 사용은 공연시작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는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이하 ” 조례 “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신청에 의한 사용료는 공연시작 3일 전까지 아트센터인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5. 위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가 모두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아트센터인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3-2)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 세부 사용내역

○ 부대시설

부대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 (원, VAT 별도)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 . (시) ~ . . (시),/ ()일간 ()시간	
양상블 리허설룸	. . (시) ~ . . (시),/ ()일간 ()시간	
리셉션룸	. . (시) ~ . . (시),/ ()일간 ()시간	
개인연습실	. . (시) ~ . . (시),/ ()일간 ()시간	
귀빈실	. . (시) ~ . . (시),/ ()일간 ()시간	
합 계		

○ 부속설비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 분	종 류	단 위	단 가		횟 수	기 간	금 액(원)	비 고
			콘서 트홀	다목 적홀				
악기	그랜드 피아노							
	- 스타인웨이 대형피아노(D274)	1일/1대	110	-				조율비 별도(전속 조율사만 조율가능)
	- 중형그랜드피아노	1일/1대	50	-				
	업라이트피아노	1일/1대	30	30				
음향	타악기							
	- 팀파니/1조(5EA)	1일/1조	90	-				
	녹음, 소스 제공							
	- 2 Track (CD, File, Wave 등 녹음)	1회	50	50				디스크, 저장장치 신청자 부담
	- Multi Track 녹음	1회	100	100				저장장치 신청자부담
	- 외부기자재(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녹화							
	- DVD, File(아트센터인천 장비)	1회	50	50				DVD 신청자 부담 Fullshot 녹화
	- 외부기자재(영상/음향소스제공)	1회/1대	50	50				카메라 2대까지 가능
	마이크							
	- 무선 마이크	1회/1대	25	25				건전지 사용자 부담
	- 유선(콘덴서) 마이크	1회/1대	10	10				서스펜션마이크 무료
	모니터 스피커							
- 12인치, 15인치	1회/1대	25	25					
확성 설치(콘솔 및 유선마이크)								
- 2ch 이하	1일	100	100					
- 3ch 이상	1일	200	200					
빔프로젝터								
- Rear Projector (20,000ANSI)	1일	200	-					
- Front Projector (20,000ANSI)	1일	-	200					

(3/3)

구분	종 류	단위	단가		횟수	기간	금액(원)	비 고
			콘서트홀	다목적홀				
조명	Grand MA 2(light)	1작품	80	80				콘서트홀 공동사용
	Moving LED Light	1일/1대	20	20				
	LED STRIP BAR	1일/1대	20	20				
	FollowSpotLight 1.75kw	1회/1대	30	-				운영인력 대관자부담
	ColorFilter	1작품	100	100				
무대	덧마루							
	- 오케스트라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 합창단 편성	1일	90	-				인력비 대관자부담
	- 40㎡ 이하	1일	-	50				인력비 대관자부담 콘서트홀 공동사용
	- 10㎡ 추가시	1일	-	30				인력비 대관자부담
	합창라이저/1조(7EA)	1일	60	60				콘서트홀 공동사용
기타	녹음							
	라디오(인터넷)방송중계 및 녹음	1회공연	300	300				테이프신청자부담
	TV 녹화 / 중계	1회공연	300	300				(지역방송50%할인)
로비 사용	포토존	1일/1개	100	100				
	팬 사인회	1일/1개	150	150				
	홍보 및 판촉부스 설치 (추가 설치)	1일/1개 (1일/1개)	80 (100)	80 (100)				
디자인 지원	조명 디자인	1작품	1,000	1,000				크루비용 별도
	음향 디자인	1작품	1,000	1,000				공연일 정상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합 계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체명 (공연자)		연락처	☎ (FAX)		
대표자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연명					
공연내용	(별지첨부)				
준비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공연기간 및 공연횟수	년	월	일	시부터	출연 및 참가예정 인원수
	년	월	일	시까지	
	(총 회)				
시설 및 부속설비	기본시설				
	부대시설				
	부속설비				
감면신청 사유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

● 신청인(사용자 또는 사용단체)

단체(공연자)명		연락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승인신청내역

공 연 명	
설 비 내 역	
설 치 목 적	
설 치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설비에 대한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 신청인(사용자 또는 사용단체)			
단체(공연자)명		연 락 처	☎ FAX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 연 명			
공 연 장 소			
공 연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관람권 검인내역				
입 장 권	구 분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원)	
석	원 권			
석	원 권			
석	원 권			
석	원 권			
석	원 권			
소	계			
합	계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개정이유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개정(2020. 11. 9.)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제명과 일치시킴(규칙 제명, 제1조부터 제3조, 별표 및 별지)
- 나. “아트센터 인천의 장”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변경하여 대외적 권한 주체 명확화(제2조)
- 다. 관련법령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 추가, 유료관객 확대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할인대상 및 할인을 조정(별표 3)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195호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개정('20.6.26. 시의회 의결, '20.7.14. 공포)된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무의 위임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없애고자 시행규칙을 폐지함.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196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며”를 “급수처에”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거주하는 방”을 “방”으로 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수질검사 의뢰) 조례 제39조의2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검사대상물을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8항제2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과정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시민 편의 및 형평성을 증대하고, 수질검사 의뢰에 대한 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여 상수도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세대별 차이량에 대한 누수 시 감면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세대별 차이량에 대하여도 제21조에 따른 누수감면을 적용(제22조제8항제2호)
- 나.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다중주택 등의 요금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가구분할 기준을 완화(제23조제2항제1호)
- 다. 기숙사 사용량 산정 근거인 ‘방 수’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제23조제2항제4호)
- 라. 수질검사 의뢰에 필요한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명시(제32조의4)
- 마. (수질)검사의뢰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8호의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8호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 2019.12.13.)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2. 22.

인천광역시장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등

- 명 칭 : 서운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 시행자 :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 면 적 : 524,970m²

나. 관리기관 : 계양구청

다. 조성목적

- 도시 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서의 기능 강화
 - 수도권 서부지역에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 계양구 및 인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재정 자립도 확충
- 계획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 인천광역시내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의 합리적 재배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

라. 추진경위

- 2013.07.04. :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설립
- 2014.10.30. :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0호)
- 2014.12.30.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완료(인천시)
- 2015.02.09.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4호)
- 2015.03.09. :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40호)
- 2015.05.18.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인천시 고시 제2015-111호)
- 2015.11.02.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인천시 고시 제2015-285호)
- 2015.12.07. : 조성공사 착공
- 2016.03.2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시 고시 제2016-43호)
- 2017.02.20.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시 고시 제2017-32호)
- 2017.03.1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인천시 고시 제2017-44호)
- 2018.04.2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시 고시 제2018-89호)
- 2018.12.0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시 고시 제2018-303호)
- 2019.07.0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시 고시 제2019-154호)
- 2019.08.12.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인천시 고시 제2019-249호)
- 2019.09.20. :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계양구 공고 제2019-1210호)
- 2019.12.1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인천시 고시 제2019-397호)

마. 분양 및 조성계획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	분양면적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산업시설 ¹⁾	314,500.2	314,500.2	314,500.2	2014년 ~ 2019년	서운일반산업 단지개발(주)
지원시설 ²⁾	12,806.9	12,806.9	12,806.9		
공공시설 ³⁾	104,674.1	3,114.6	104,674.1		
녹지구역 ⁴⁾	92,988.8		92,988.8		
합 계	524,970.0	330,421.7	524,970.0		

- 주) 1. 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센터용지
 2. 지원시설용지
 3. 공공공지, 하천, 저류시설,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빗물펌프장, 도로
 4. 공원, 녹지

바. 입지여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진입도로는 경명대로와 연결되는 폭 23.5m 도로계획(4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계양IC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경명대로를 연계한 단지 내부진입도로 신설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접한 봉오대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정수장으로부터 상수를 공급받아 계산1배수지를 통해 기존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일 최대수요량(m³/일)</th> <th rowspan="2">공급량 (m³/일)</th> <th rowspan="2">시설용량¹⁾ (m³)</th> </tr> <tr> <th>공 업</th> <th>생 활</th> <th>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1,247.7</td> <td>228.2</td> <td>1,475.9</td> <td>1475.9</td> <td>30,000</td> </tr> </tbody> </table> <p>주1) 계산1배수지 시설용량</p>			일 최대수요량(m ³ /일)			공급량 (m ³ /일)	시설용량 ¹⁾ (m ³)	공 업	생 활	합 계	1,247.7	228.2	1,475.9	1475.9	30,000		
일 최대수요량(m ³ /일)			공급량 (m ³ /일)	시설용량 ¹⁾ (m ³)														
공 업	생 활	합 계																
1,247.7	228.2	1,475.9	1475.9	30,000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총 발생폐기물량에서 재활용량을 감안하여 처리대상폐기물량을 산정한 결과 총 5,835ton/년으로 나타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폐기물량(kg/일)</th> <th>ton/년</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장생활폐기물</td> <td>788.7</td> <td>-</td> </tr> <tr> <td>사업장폐기물</td> <td>59,157.7 (재활용: 43,171.2)</td> <td>5,835 (재활용제외)</td> </tr> <tr> <td>합 계</td> <td>59,946.4</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폐기물량(kg/일)	ton/년	사업장생활폐기물	788.7	-	사업장폐기물	59,157.7 (재활용: 43,171.2)	5,835 (재활용제외)	합 계	59,946.4	-			
구 분	폐기물량(kg/일)	ton/년																
사업장생활폐기물	788.7	-																
사업장폐기물	59,157.7 (재활용: 43,171.2)	5,835 (재활용제외)																
합 계	59,946.4	-																
오·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정화 후 방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일 최대발생량(m³/일)</th> <th rowspan="2">시설용량 (m³/일)</th> </tr> <tr> <th>오 수</th> <th>폐 수</th> <th>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312</td> <td>661</td> <td>973</td> <td>1,000</td> </tr> </tbody> </table>			일 최대발생량(m ³ /일)			시설용량 (m ³ /일)	오 수	폐 수	합 계	312	661	973	1,000				
일 최대발생량(m ³ /일)			시설용량 (m ³ /일)															
오 수	폐 수	합 계																
312	661	973	1,000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의 인근변전소(임학변전소, 신부평변전소)로부터 공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연가전력수요량 (MWh/년)</th> <th>최대부하 (kW)</th> </tr> </thead> <tbody> <tr> <td>산업시설용지</td> <td>82,137</td> <td>17,597.0</td> </tr> <tr> <td>지원시설용지</td> <td>9,424¹⁾</td> <td>1,775.0</td> </tr> <tr> <td>공공시설용지</td> <td>196²⁾</td> <td>40.0</td> </tr> <tr> <td>합 계</td> <td>91,757</td> <td>19,412.0</td> </tr> </tbody> </table> <p>주1) 지원시설전력수요에 흡수식냉방부하 포함(냉방전력수요 1,426MWh/년 포함) 주2) 공공시설전력수요에 흡수식냉방부하 포함(냉방전력수요 13MWh/년 포함)</p>			구 분	연가전력수요량 (MWh/년)	최대부하 (kW)	산업시설용지	82,137	17,597.0	지원시설용지	9,424 ¹⁾	1,775.0	공공시설용지	196 ²⁾	40.0	합 계	91,757	19,412.0
구 분	연가전력수요량 (MWh/년)	최대부하 (kW)																
산업시설용지	82,137	17,597.0																
지원시설용지	9,424 ¹⁾	1,775.0																
공공시설용지	196 ²⁾	40.0																
합 계	91,757	19,412.0																
열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도시가스(주) 공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열수요량(Gcal/년)</th> <th>최대열부하(Gcal/hr)</th> </tr> </thead> <tbody> <tr> <td>산업시설용지</td> <td>120,381</td> <td>13.02</td> </tr> <tr> <td>지원·공공시설용지</td> <td>5,973</td> <td>3.84</td> </tr> <tr> <td>합 계</td> <td>126,354</td> <td>16.86</td> </tr> </tbody> </table>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r)	산업시설용지	120,381	13.02	지원·공공시설용지	5,973	3.84	합 계	126,354	16.86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r)																
산업시설용지	120,381	13.02																
지원·공공시설용지	5,973	3.84																
합 계	126,354	16.86																
수질오염 방지시설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위 치</th> <th>면적(m²)</th> </tr> </thead> <tbody> <tr> <td>공공폐수처리시설</td> <td>서운동 220-13번지</td> <td>1,998.9</td> </tr> </tbody> </table>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공공폐수처리시설	서운동 220-13번지	1,998.9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공공폐수처리시설	서운동 220-13번지	1,998.9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산재된 개별공장의 합리적 재배치 및 이전 희망업체의 효율적 관리
-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의 앵커기지 역할 기대

2)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지역현황과 연계하여 환경오염 및 공해유발업종의 입주제한
-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의 이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계획 및 관리
- 용지 용도별 입주자격 등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준용

3)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m², %)

구 분	합 계	산업시 설 구 역	지원시 설 구 역	공공시 설 구 역	녹 지 구 역
면 적	524,970	314,500.2	12,806.9	104,674.1	92,988.8
구성비	100.0	59.9	2.4	20.0	17.7

2)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m², %)

구 분	합 계	일반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
면 적	314,500.2	262,115.2	9599.2	42,785.8
구성비	100.0	83.3	3.1	13.6

* 목적용지는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

3) 구역별 건축 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구 분	건축물의 범위	건축계획
산 업 시 설	·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70%이하 · 용적을 300%이하 · 높이 5층 이하
지식산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업종에 한함 ·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호의 시설 	
복 합 업 종 (중소기업전용)	·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 (5)에 의한 중소기업 전용단지	

○ 지원시설구역

- 건축물의 범위

- 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계획

- 건폐율 70%이하, 용적을 400%이하, 높이 6층이하

○ 공공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호에 의한 공공시설

- 주차장

- 건폐율 80% 이하, 용적을 400% 이하, 높이 5층 이하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다.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계		314,500.2	100.0
일 반 제 조 업	소 계	262,115.2	83.3
	C25. 금속가공 제조업	76,127.3	24.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073.9	8.9
	C28. 전기장비 제조업	30,022.3	9.5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294.7	25.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646.1	11.0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958.0	1.6
	C33. 기타제품 제조업	8,992.9	2.9
지식산업센터		9,599.2	3.1
복합업종 (중소기업전용단지)		42,785.8	13.6

○ 입주현황(2021. 2. 3. 기준)

구분	입주계획		입주현황		비고
	필지수	면적(m ²)	업체수	면적(m ²)	
계	79	333,756.2	53	211,248.8	
산업시설	70	314,500.2	52	207,947.3	임대업체 62개사 별도
지원시설	6	12,806.9	-	-	구립어린이집 1개소
주차장	3	6,449.1	1	3,301.5	공영주차장 1개소

○ 업종별 배치기준

- 유치업종으로 선정한 7개 업종별 투입원료의 공동구매, 기술 및 정보의 공유와 함께 폐부산물의 공동처리가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집적화
- 수요조사 결과 소규모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및 중소기업 전용단지인 복합업종은 단지중심에 배치
- 중규모의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계 및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단지외곽에 배치하여 소규모 산업용지와 분리
- 지식산업센터는 교통분산을 유도하고 상징성을 고려하여 단지 남서측에 배치
- 업종배치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진출입조건, 공장부지 여건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수요에 따른 적정규모 및 배분비율에 따라 배치

※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붙임

라. 입주관리 계획

1) 주요 입주대상업종 : 15개업종

구 분	입주대상업종
일반제조업	C25 금속가공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복합업종 (중소기업전용단지)	위 일반제조업(8개 업종)
	C10 식료품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지식산업센터	위 제시된 15개 업종 및 관련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종

-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58조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불가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 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
- ※ 복합업종(중소기업전용단지) 입주업종은 중소기업전용단지 내에서만 영위가능 (임차업체 포함)

2) 입주대상업종 중 제한업종

중분류	입주제한 업종 (세, 세세분류)
C10 식료품제조업	10110)도축업, 10800)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1021)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16103)목재보존,방부처리,도장및유사처리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311)시멘트제조업, 23321)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23322)레미콘제조업, 23325)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및블록제조업, 23326)콘크리트관및기타구조용콘크리트제품제조업, 23329)그외기타콘크리트제품및유사제품제조업, 23991)아스콘제조업, 23999)그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24191)도금,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24211)동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12)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13)연및아연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19)기타비철금속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21)동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24222)알루미늄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24229)기타비철금속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24290)기타1차비철금속제조업, 24311)선철주물주조업, 24312)강주물주조업, 24321)알루미늄주물주조업, 24322)동주물주조업, 24329)기타비철금속주조업
E3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81)폐기물 수집운반업 382)폐기물 처리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922)도금업 25923)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221)인쇄회로기판제조업, 26222)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292)고무,화학섬유및플라스틱성형기제조업 29294)주형및금형제조업

※ 입주제한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제조공정의 업종은 허용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제2항4호에서 불허하는 용도(「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 가능)
- 「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3)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법 제38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 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공통사항

-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4) 입주절차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5) 분양한도(산업시설구역에 한함)

- 최소 분양면적 :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최소공급 면적인 1,650㎡이상 단, 지적확정 측량으로 인한 오차는 제외한다.

마. 입주우선순위 기본지표

1) 산업시설구역

- 1순위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2순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3순위 : 1순위, 2순위 외 기업

2) 지원시설구역

- 경쟁입찰 낙찰가격 순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6항)

바. 사후 관리계획

1)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6개월간의 시정명령을 거쳐 환수할 수 있음.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등 분양용지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 본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입주·분양 계약서에 의함.

2) 산업용지 분할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분할 면적으로써 1,650㎡을 말함.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 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하고,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을 변경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함.

3) 환경관리

-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강화된 하천수질기준(BOD 5mg/L, COD 15mg/L, SS 10mg/L, T-N 15mg, T-P 0.2mg/L, 대장균군 3,000개/mL, 생태독성 1TU)을 적용하여 방류하되, 방류 하천의 목표수질 유지에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 추가저감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유입설계기준 적용 검토 및 사전협의)하여 개별업체에서 1차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수질오염총량관리를위한비점오염원최적화관리지침(국립환경과학원), 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실적대장작성지침(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른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및운영관리지침(환경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공원과 녹지의 설치를 통해 입주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

4)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 및 소방 파출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법 제45조 및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

사. 입주 기업체 지원계획

1) 공장설립 지원계획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 등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2) 생산활동 지원계획

- 기술개발 및 수출, 무역,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
- 구인·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
- 각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3)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계획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 향상 교육 실시
-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 및 유휴 여성인력의 취업기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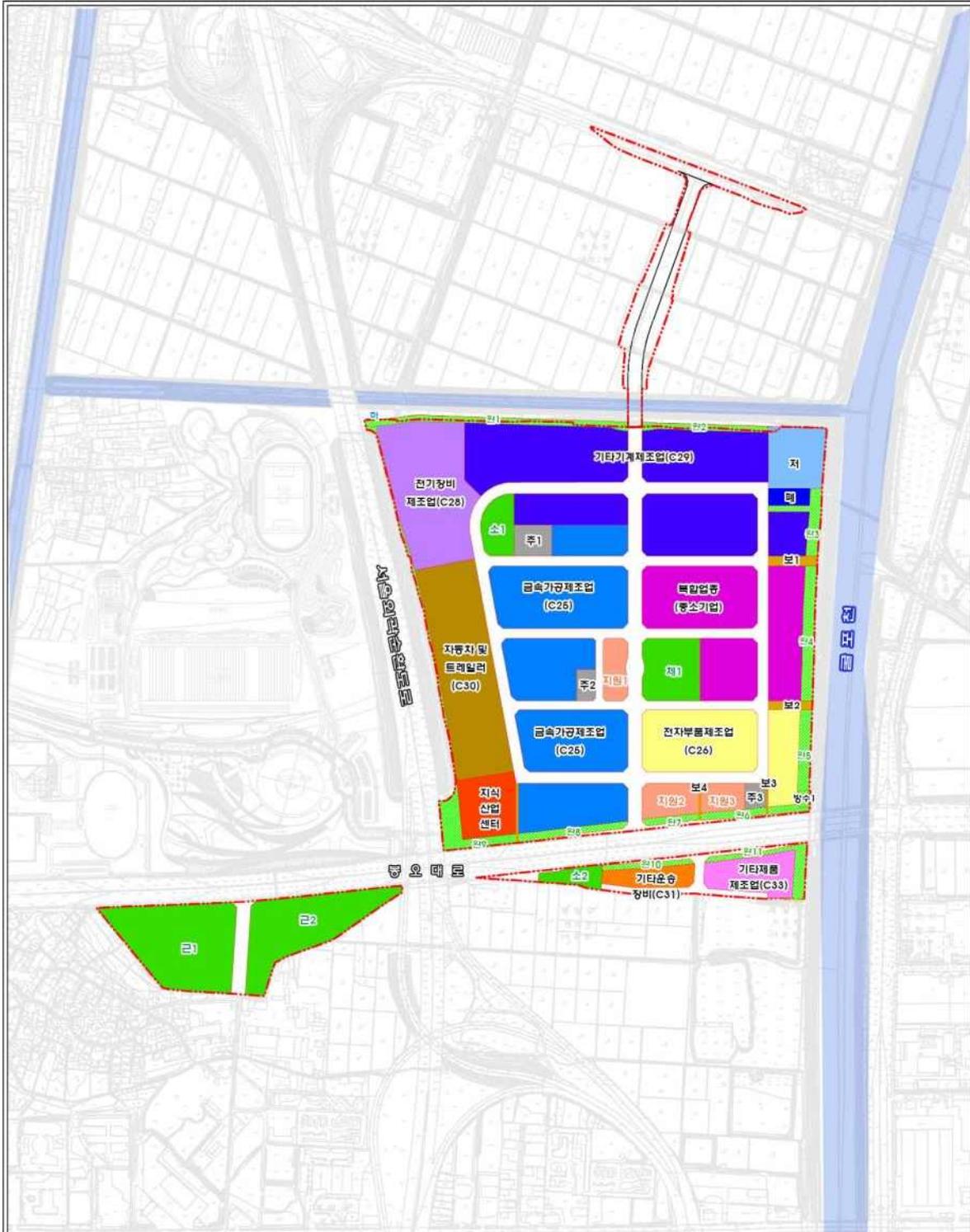
4)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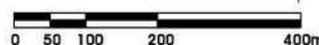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아.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 산업용지 등의 처분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름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희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본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에 의거 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을 규정한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서운일반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른다.

□ 불임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도



<p>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계 산업시설용지 금속가공제조업(C25) 전자부품제조업(C26)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운송장비(C31) 기타제조업(C33)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통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시설용지 공원지 저류지 복수용일차리랑 주차장 빛물림조각(광역개발형) 보행자도로 도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도</p>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5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개별 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통합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장)
-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인천광역시 청소년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4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보호단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도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6.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활동 육성 및 시설

제1절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판사·변호사 등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육성위원회의 기능) 육성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5.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7.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大賞)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8.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육성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육성위원회의 간사 등)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업무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육성위원회의 회의록) 육성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육성위원회의 출석발언)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청소년대상(大賞)

제14조(수상대상자)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1. 대상 :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성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사람
3. 선행부문 :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사람
4. 면학부문 :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5.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사람
6.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사람

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수상대상자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이 심사한다.

제1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한다.

제16조(시상) 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한다.

제17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기록 보존)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중 포상금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3절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제20조(청소년단체협회의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시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단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제21조(단체협회의 사무소의 소재지) 단체협회의 사무소는 시 관할 지역 안에 둔다.

제22조(단체협회의 사업) ① 단체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와 지원
2. 청소년관련 도서와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3.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료수집
4. 청소년 수련과 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5. 우수회원 단체, 모범 청소년지도자와 모범청소년 표창
6.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7. 그 밖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전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단체협회의 법인설립) ① 단체협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단체협회의 가입회원 및 협력) ① 단체협회 가입회원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 등으로 하며 회원의 범위 및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② 단체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와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제25조(단체협회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단체협회의 운영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6조(단체협회의 준용) 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청소년활동 진흥

제27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활동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구청장, 해당 지역 각 급 학교장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제31조(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사업)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정체성 확립,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청소년 건전 문화의 육성사업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보호 지원사업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3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
2.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4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수련관

가. 오전 : 08: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박 : 13:00 ~ 다음 날 12:00

2. 청소년문화센터

가. 화~토 : 09:00~21:00 (동절기 12월~2월 : 09:00~19:00)

나. 일요일 : 09:00~18:00

다. 매주 월, 공휴일 휴무

제35조(사용허가) ①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인터넷 또는 FAX로 요청 할 수 있다.

제3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되는 사람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사용료) 시장이 제3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제38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 및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가, 나, 라, 마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2. 100분의 50 감면

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나.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가.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2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받은 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청소년 참여 및 시민명예감시원

제1절 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

제43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性)·나이 및 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44조(참여위원회의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 과정의 의견 제안
2. 관내 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45조(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

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참여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질병 및 사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7조(참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참여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참여위원회의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50조(참여위원회의 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참여위원회의 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참여위원회의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참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절 시민명예감시원 운영

제54조(시민명예감시원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 보호단체·법인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1년 이상 청소년보호 활동을 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100인 이내로 인천광역시시민명예감시원(이하 “시민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시민명예감시원 기능) 시민명예감시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여부 순찰과 위반자 신고·고발
3.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와 선도보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의 요청에 의한 청소년보호활동과 합동단속 참여

제56조(시민명예감시원 임기) 시민명예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7조(시민명예감시원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명예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모자와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감시원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시정설명회와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2.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2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제37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용료		비고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가. 공연장	오전	30,000	45,000	
	오후	50,000	75,000	
	야간	60,000	90,000	
나. 강의실 등	1실 1회	15,000	22,500	
다. 야외공연장 운동장	1회	20,000	30,000	
라. 생활관	1실 1박	40,000	60,000	8인실
		20,000	30,000	4인실
		10,000	15,000	2인실
마. 체육관	오전	30,000	45,000	
	오후	50,000	75,000	
	야간	60,000	90,000	

【비고】

-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 (3)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1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 한다.

나.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① 수영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1회 기준)	초등학생 이하	10,000
	중·고등학생	11,000
	성 인	16,000
월간 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포함, 주1회)	초등학생 이하	25,000
	중·고등학생	30,000
	성 인	45,000
일일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 포함)	초등학생 이하	1,500
	중·고등학생	2,000
	성 인	4,000

② 아쿠아로빅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성 인	(월간이용, 주1회 기준)	17,000

③ 헬스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고등학생 이하	(월간이용)	20,000
성 인	(월간이용)	40,000

④ 그 밖의 체육문화 프로그램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댄스, 체육·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1회 기준)	고등학생 이하	10,000
	성 인	15,000

【비 고】

- (1) 2종목 이상 수강 시 당해 기준 수강료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수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가.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이용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원)
가. 다락홀	무제한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무료
나. 파티룸	1시간	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	
다. 게임룸	1시간		
라. 힐링룸	1시간		
마. 댄스연습실	2시간		
바. 밴드연습실	2시간		
사. 스터디룸	2시간		

【비 고】

- (1) 전체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1일 1실 2회 사용은 불가 함.
- (2) 대학생 : 평일 오후 3시 이전에는 전 시설 사용 가능/ 평일 오후 3시 이후, 주말, 청소년방학기간에는 스터디룸, 다락홀만 사용 가능
- (3) 사전예약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1일(18시 이전)전까지 신청(18시 초과 시 예약불가)
- (4) 예약시간(15분 내)에 오지 않으면 자동 취소(늦으면 반드시 센터로 연락)
- (5) 특정 종교모임을 위한 시설 사용은 불가

관계법령 발취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기본법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활동 진흥법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보호법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 법규 정비 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사항 없음”</p>
특이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없음”</p>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 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1.~7. 생략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1조 제1항, 제2항(시설 운영의 위탁)

제27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③ 시장은 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은 예산 범위내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사항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화 영

기 타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21-41호

『역무도급 수급인 모집』 공고(재공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역무도급역을 운영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수급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2. 22

인천교통공사 사장

1. 모집내용

대상역	모집대상	도급방법	모집인원	계약기간	비 고
동 수 역 신 연 수역 동 춘 역 센트럴파크역	도급역 운영 책임자 (수급인)	수급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역무수행	4명	2021. 4. 1 ~ 2023. 3. 31 (2년)	1인1역

※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사 역무도급 운영정책 전환』에 따라 중도 해지 가능

※ 사업설명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중 공사방문 시 개별 설명

2. 선정방법

가. 제1차 : 서류심사

나. 제2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3. 도급업무

가. 도급역 운영인력 배치

나. 도시철도 이용고객 안내

다. 역 시설물 점검 및 관리

라. 이례상황 발생시 긴급조치 및 이용고객 안전 확보

마. 수입금 관리, 역무자동화 설비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바. 역사 안전 및 청결 관리

사. 그 밖에 역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4. 지원자격

가. 연 령 : 제한없음

나. 거주지 : 2021. 1. 1.부터 면접심사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라. 도시철도(수도권 전철 포함) 10년 이상 유경험자

마. 재무 및 신용상태가 건전한 자

바. 업무수행에 있어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회적 신뢰성이 있는 자

5.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 1) 역무도급 운영지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 1)
- 2) 역무도급 운영 종합계획서 1부(소정양식 : 붙임 2)
- 3)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붙임 3)
- 4)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 세부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 7) 제출용 신용보고서 1부
- 8) 역무도급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4)
- 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1부(붙임 5)
- 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6)

※ 채용신체검사서 및 제출용 신용보고서 제출은 최종 선정자에 한하며, 제출결과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수급인으로 선정

나. 제출처 : 인천교통공사 6층 운수기획팀(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 접수기간 내 제출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휴게시간(12:00~13:00) 접수제외

6. 심사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 선정자 발표
2021.3.3.(수) ~ 3.5(금) (09:00~17:00)	2021.3.10.(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알림	2021.3.15.(월)

※ 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서류심사 합격 및 최종선정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에 공고합니다.

3) 소정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기 바라며,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알립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최종 선정된 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와 신체검사 결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나. 수급인으로 선정된 자는 안정적인 역무운영을 위해 기존 도급역 직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하며, 직원 보수지급은 공사가 설계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공사가 원하는 수준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라. 최종 수급인으로 선정된 경우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정된 연간 도급수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최종 수급인으로 선정된 자로서 현직에 재직 중인 자는 도급계약체결 즉시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새로운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보험료(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지급내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사의 도급역 운영정책 전환에 따라 계약은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운수기획팀(☎032-451-2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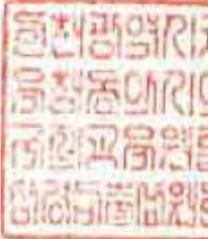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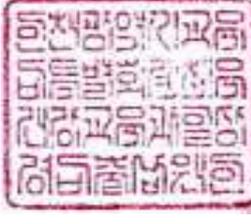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조직이 2021. 3. 1.자로 개편되어 신설된 직속기관, 명칭변경 및 신설(폐지)된 부서의 회계 직인을 신규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 : 2021. 3. 1.

[신규회계관인]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 체육건강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분임징수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물품관리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정책기획조정관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미래학교혁신과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체육건강교육과일	

과일상경비출납원인	상경비출납원인	상경비출납원인	
			

폐기년월일 : 2021. 2. 28.

[폐기회계관인]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예산복지과, 평생교육체육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정책기획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민주시민교육과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예산복지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평생교육체육과일 상경비출납원인
			

2021. 2. 23.

인천광역시교육감